

www.idi.re.kr  
2017 현안연구

# 인천 지역 예술대학 설립 방안 검토

배은주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진

연구책임

배은주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본 연구결과는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차례

I. (가칭)인천예술종합대학 설립 필요성 .....	1
1. 시민의 문화적 권리 실현과 행복추구 .....	1
2. 문화도시 인천의 위상 제고 .....	1
3. 전문예술인 육성 .....	2
4.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	3
II. (가칭)인천예술종합대학 설립 관련 법률과 예산 검토 .....	5
1. 설립 관련 법률 검토 .....	5
2. 설립 관련 예산 검토 .....	9
III. (가칭)인천예술종합대학 설립 가능 방안 .....	13
1. 신설 방안 .....	13
2. 증원 방안 .....	14
3. 이전 방안 .....	15
IV. 결론 .....	17
참고문헌 .....	19

## 표차례

<표 1-1> 인천시 문화예술 관련 학교, 학과 현황 .....	2
<표 1-2> 인천예술고등학교 재학생 현황(2017년 기준) .....	2
<표 1-3> 인천예술고등학교 지역별 대학입시 합격 현황(2016-2017년도, 중복) .....	3
<표 1-4> 인천시 문화예술 관련 시설 및 축제 현황(2016) .....	4
<표 11-1> 인천시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5
<표 11-2>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규정 .....	6
<표 11-3>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예외 규정 .....	6
<표 11-4>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경우 .....	7
<표 11-5>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경우 .....	7
<표 11-6>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시행령에 따른 대학 신·증설 규제 현황 .....	8
<표 11-7> 유사기관의 건축비 사례 .....	9
<표 11-8> 국내 예술대학의 학생1인당 소요면적 .....	10
<표 11-9> 부산대와 인천대의 예술전공 비율 비교 .....	10
<표 11-10> 예술대학 규모별 필요 건축비 추산 .....	11
<표 111-1> 11개 시·도별 국립대학의 예술대학 설치 현황 .....	14

## 그림차례

<그림 1-1> 인천시 문화기반시설 증가 추이(2008-2016) .....	3
--	---

# I (가칭)인천예술종합대학 설립 필요성

## 1. 문화주권의 실현과 행복추구

- 경제성장에 따라 문화여가 활동을 통한 행복추구권이 강조되고 국민의 여가 선용이 국가경쟁력의 핵심변수로 작용하게 됨(주성돈, 2015: 140).
- 정부 정책의 기조로 ‘문화가 있는 삶’이 대두된 이후 행복증진을 위해 일상적인 문화향유를 통한 문화적 욕구 충족이 중요해짐.
- 인천광역시도 최근 인천가치 재창조를 통한 문화주권의 실현과 시민의 문화적 권리 실현을 위해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생활문화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 예술가 및 기획·관리·운영의 전문가인 문화예술 전문인력이 필요함.

## 2. 문화도시 인천의 위상 제고

-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문화성시<sup>1)</sup>를 이루겠다는 인천광역시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문화도시로서의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적 향유와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그 인프라에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전문가 양성, 문화예술 인프라와 콘텐츠의 만남을 기획, 관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감수성과 안목, 참여의식을 가진 시민 등이 모두 있어야 문화도시 인천의 위상이 드높아질 것임.

1) ‘문화성시(文化成市)’는 문화도시를 이루는(成) 도시, 문화가 넘치고 쇄도하는(盛) 도시의 중의적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임.

- 그런데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인천광역시에는 문화예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 부재하다는 점은 문화도시로서의 인천 위상을 격하시키는 요인이 됨.

### 3. 전문예술인 육성

-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융성해지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예술인을 지역이 육성하고 배출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인천광역시 관내에는 전문예술인을 육성할 수 있는 예술종합대학이 없어 전문예술인을 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문화예술 관련 전문교육기관은 고등학교 1개교, 대학교 6개교, 대학원 3개교임.

<표 1-1> 인천시 문화예술 관련 학교, 학과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학교수	학과수	학생수
고등학교	1	3	462
대학교	6	34	4,526
대학원	3	19	253

자료: 고등학교는 학교알리미(2017. 4월 기준), 대학교와 대학원은 김창수·최영화(2016). p.18 참고.

- 이 중에서 예술전문학교는 인천예술고등학교가 유일하며, 3개과에 462명이 재학하고 있음.

<표 1-2> 인천예술고등학교 재학생 현황(2017년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음악과	192	61	67	64
미술과	212	72	70	70
무용과	58	20	18	20
계	462	153	155	154

\* 2015~2018년 신입생 모집인원 : 총 165명(음악과 70명, 미술과 70명, 무용과 25명)

자료: 학교알리미(2017. 4월 기준)

- 그러나 인천예술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예술대학이 인천광역시 내에 부족하여 타 시·도의 대학으로 대거 진학함에 따라 전문예술인력이 관내에서 육성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결과를 야기함.

<표 1-3> 인천예술고등학교 지역별 대학입시 합격 현황(2016-2017년도, 중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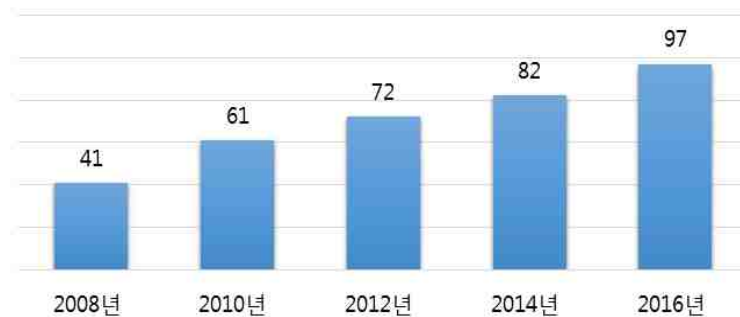
지역	2016년도				2017년도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	계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	계
서울	62	32	20	114 (59.7)	49	44	18	111 (64.9)
인천	1	12	2	15 (7.9)	0	12	2	14 (8.2)
대전	0	2	0	2 (1.0)	1	2	0	3 (1.8)
경기	24	16	4	44 (23.0)	17	7	2	26 (15.2)
강원	0	0	0	0 (0.0)	0	2	0	2 (1.2)
충북	0	1	0	1 (0.5)	0	1	0	1 (0.6)
충남	0	5	0	5 (2.6)	0	4	0	4 (2.3)
전북	0	0	0	0 (0.0)	0	1	0	1 (0.6)
전남	0	0	0	0 (0.0)	1	0	0	1 (0.6)
경북	0	1	0	1 (0.5)	0	0	0	0 (0.0)
기타	0	2	1	3 (1.6)	1	6	1	8 (4.7)
유학	3	3	0	6 (3.1)	0	0	0	0 (0.0)
계	90	74	27	191 (100)	69	79	23	171 (100)

자료: 인천예술고등학교 내부자료

-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전문예술인들이 배출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을 확대하여야 예술인력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인천인으로서의 지역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임.

#### 4.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축제와 행사를 제공, 운영하는 문화기반시설이 증가하고 있음.



자료: 문화기반시설총량 2016

<그림 1-1> 인천시 문화기반시설 증가 추이(2008-2016)

- 문화기반시설 외에도 문화재단이 생겨나고 지역단위 문화예술 관련 축제도 성행하고 있음.

<표 1-4> 인천시 문화예술 관련 시설 및 축제 현황(2016)

(단위: 개)

구분	문화재단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축제
중구	1	16	3
동구		3	
남구		15	1
연수구		9	2
남동구		10	
부평구	1	13	
계양구		8	
서구		11	1
강화군		11	
옹진군		1	
인천(계)	2	97	7

자료: 문화기반시설총람 2016

- 문화예술 축제로 굳이 분류되지는 않더라도 지역특산물, 생태자연, 전통역사 관련 지역축제들도 성행하고 있고, 이 지역축제들도 문화예술과 접목되는 경향이 많아 문화예술 전문인력은 다양한 지역축제에서도 필요한 인력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관리, 마케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적 안목을 가진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 이러한 수요 증대에 맞추어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 배출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 또한 필요함.
-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전달체계 및 전담자인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문화 양극화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5. 문화예술 여건의 수도권 내 불균형 해소

- 인천시가 문화예술 인력양성에 적극 나서고자 해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 때문에 문화예술 대학 설립이 어려운 현실임. 그러나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로의 집중이고 수도권 내 불균형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수도권으로 묶여 열악한 문화예술 여건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음.

- 문화예술 분야도 인력이나 시설 등이 모두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내에서도 균형적이지 않음.
  - 실질적으로는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을 뿐, 그 외 수도권 지역인 인천이나 경기도는 문화예술 관련 인력이나 시설, 산업 분야에서도 타 지방과 마찬가지로 뒤처져 있는 실정임.
  -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로의 집중이지, 인천이나 경기도 지역은 문화인력, 문화산업, 문화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열악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규제의 대상이 되어 인천은 문화예술 분야의 열악함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
  -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 오히려 자체적으로 시설 설치, 인력 육성 등 문화예술 분야의 융성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수도권에 묶여 있는 인천의 경우 규제로 인해서도 그리고 서울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도 문화예술 분야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처지임.
- 따라서 서울로의 집중을 막기 위해 인천까지 수도권으로 묶어 규제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수도권 내에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인천 지역에 종합예술대학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II (가칭)인천예술종합대학 설립 관련 법률과 예산 검토

### 1. 설립 관련 법률 검토

#### 1)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 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으로 구분됨.
- 고등교육기관은 국가(국립), 지방자치단체(시립 혹은 도립), 학교법인(사립)이 설립, 경영할 수 있음.
- 학교의 설립은 시설,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 2)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시행령

-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
- 이 법률에 따르면, 인천은 서울, 경기와 함께 수도권에 속하며,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됨.

<표 II-1> 인천시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구분	해당 지역
성장관리권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과밀억제권역	위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권정비계획법

- 이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정된 시설은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서 신설, 증설,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할 수 없음(제7조 1항의 1, 제8조 1항).
-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속하는데, 그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한다)임.

<표 II-2>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규정

구분	세부 내용
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권정비계획법

- 다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이 허가될 수 있음(제7조 2항의 1).

<표 II-3>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예외 규정

구분	세부 내용
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권정비계획법

- 학교에 대하여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완화될 수 있는 경우는 7가지이나, 인천의 예술대학과 관련하여 가능한 경우는 다음 4가지임.

<표 II-4>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경우

구분	세부 내용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 제11조 1	가.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신설. 다만,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지역에 신설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다.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학교 이전(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다만, 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육 여건의 개선 등 교육정책상 부득이하거나 도시 안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각원을 설치하기 위한 입학 정원의 증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이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총량규제에 적합한 범위에서 신설(산업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만 가능)이나 입학정원의 증원, 이전(대학이나 교육대학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필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각원을 설치하기 위한 입학 정원의 증원만이 허용될 수 있음.

○ 성장관리권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신설·증설은 허가되지 않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될 수 있음.

<표 II-5>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경우

구분	세부 내용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 제12조 1	가.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신설. 또는 입학 정원이 50명 이내인 대학(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 전문 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 정원이 100명 이내인 대학을 말함. 이하 '소규모대학')의 신설
	나.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다. 신설된 지 8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규모대학 입학 정원의 증원(최초 입학 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원만 해당하며, 신설된 후 8년 이내에는 나목에 따른 증원을 할 수 없다)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라. 수도권에서의 학교 이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3) 소결

- 인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대학급의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는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서 원칙적으로 신설, 증설,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할 수 없음.
-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이 허가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다음과 같음.

<표 II-6>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시행령에 따른 대학 신·증설 규제 현황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신설	4년제 대학 (교육대학 포함)	금지	금지
	소규모대학 (50인 이내)	금지	심의 후 총량범위 내*
	대학원대학	가능(총량범위 내)	가능(총량범위 내)
	산업대학	가능(총량범위 내)	가능(총량범위 내)
	전문대학	가능(총량범위 내)	가능(총량범위 내)
이전	4년제 대학 (교육대학 포함)	심의 후 권역 내 (서울로는 불가)	수도권 내 가능
	소규모대학 (50인 이내)	심의 후 권역 내	수도권 내 가능
	대학원대학	권역 내 가능	수도권 내 가능
	산업대학	권역 내 가능	수도권 내 가능
	전문대학	권역 내 가능	수도권 내 가능
증원 (총량 규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각원을 설치하기 위한 입학정원의 증원		신설 8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규모대학 입학정원의 증원(최초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만 가능)으로 심의 후 가능
	대학 및 교육대학의 입학정원 증가 총수는 국토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단, *의 증원 수는 입학정원 증가 총수에서 제외) 산업, 전문대학: 전년도 전국 입학정원 증가 총수의 10% 이내 허용 대학원대학: 수도권 전체 매년 300명 이내 허용 (단, 국토부장관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경우는 예외)		

\*: 심의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 따라서 인천에서는 예술종합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으로는 신설이 불가능하며,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으로만 총량범위 내 신설이 가능함.
- 이전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과 소규모대학은 심의를 거쳐 과밀억제권역 내 이전이 가능하며,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은 심의 없이 과밀억제권역 내 이전이 가능함.
- 증원의 경우 4년제 대학은 심의를 거쳐 총량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전년도 전국 입학정원 증가 총수의 10% 이내에서,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전체 매년 300명 이내에서 가능함.

## 2. 설립 관련 예산 검토

- (가칭)인천예술종합대학의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가늠해 보기 위해 유사 사례를 통하여 추산해 봄.
- 실 건축비의 경우 유사기관의 설립 건축비 사례를 살펴봄.

<표 II-7> 유사기관의 건축비 사례

구분	국립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신축	대구경북과학 기술연구원 신축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대학교	도서관	정보센터
산정 기준년도	2009년	2007년	2016년		
연면적	216,087㎡ (65,366평)	97,626㎡ (29,532평)	11,791㎡ (3,567평)	4,423㎡ (1,338평)	11,954㎡ (3,616평)
총 (예상) 공사비	3,565억원	2,428억원	22,863백만원	9,154백만원	19,289백만원
평당 단가	545만원	822만원	641만원	684만원	533만원
비고	용역비 482억원 제외	부지매입비 500억원 제외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설사업관리비, 각종 인입비, 폐기물처리비 등 제외		
출처	2009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인천대학교 주요업무보고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대구경북과학기술 연구원 건설사업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6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조달청		

- 유사사례들을 검토해 보면 대개 **평당 550~650만 원**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남. 여기에 설계비, 각종 설비비, 부지매입비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하면 총 필요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예술대학의 경우 학생1인당 평균 소요면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아래 사례들을 참고해 보면 학생1인당 평균 소요면적은 41.6㎡(12.6평) 정도인데 충남지역에서 넓은 연면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제외하고 산출해 보면, **학생1인당 평균 소요면적은 32㎡(9.7평)** 정도임.

<표 II-8> 국내 예술대학의 학생1인당 소요면적

지역	학교구분	학교명	설립유형	정원 (학부,명)	계(교사시설 연면적)	1인당 소요면적
서울	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사립	1,160	40,985㎡ (12,398평)	35.3㎡ (10.7평)
서울	각종학교 (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특별법 국립	2,252	120,177㎡ (36,354평)	53.4㎡ (16.1평)
충남	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	560	43,969㎡ (13,301평)	78.5㎡ (23.8평)
전북	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사립	750	17,992㎡ (5,443평)	24㎡ (7.3평)
경북	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사립	1,850	29,710㎡ (8,987평)	16.1㎡ (4.9평)

자료: 대학알리미(2016. 4월 기준)

○ 인천대학교의 경우 음악 관련 전공이 없어 예술대학 정원이 500명도 되지 않지만, 관련 전공이 모두 있는 부산대학교의 경우 예술대학 정원이 1,000명이 넘어 대학 전체 정원의 6%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인천 지역에 설립(혹은 이전이나 증원 등)될 예술대학의 규모는 4년 전체 정원이 최소 약 600명 이상의 규모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표 II-9> 부산대와 인천대의 예술전공 비율 비교

구분	예술전공 학생 정원(명)					대학 총 정원 (명)	예술전공 비율
	미술	음악	무용	공연예술	계		
부산대학교	485	403	144	95	1,127	17,524	6.4%
인천대학교	351	0		117	468	10,381	4.5%

자료: 인천대학교 학칙(2017.7.12.), 부산대학교 학칙(2017.6.9.) 참고.



- 이를 토대로 예술대학의 규모를 학생 4년 정원이 약 600명과 750명, 1,000명 규모로 나누어 학생1인당 평균 필요면적 32㎡(9.7평)을 적용하여 필요 건축비를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II-10> 예술대학 규모별 필요 건축비 추산

정원 규모	필요 연면적	필요 건축비	
		평당 550만원 적용	평당 650만원 적용
600명 규모	19240㎡ (5,820평)	320억원	378억원
750명 규모	24050㎡ (7,275평)	400억원	473억원
1000명 규모	32,066㎡ (9,700평)	533억원	630억원

주: 기타 소요 부대 비용 제외

- 여기에 설계비, 각종 설비비, 부지매입비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하면 필요 건축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Ⅲ (가칭)인천예술종합대학 설립 가능 방안

## 1. 신설 방안

### 1) 독립대학으로 신설

- 전문대학이나 대학원대학으로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 모두 총량범위 내에서 설립 가능
-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경우 전문대학으로도 양성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전문예술인의 경우 전문대학으로 육성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도 학부과정이 없으므로 대학진학을 위해 타 시·도로 문화예술 인력이 많이 유출될 것이 예상되어 적절한 방안이라고 하기 어려움.

### 2) 각종학교 설치 대통령령 제정을 통한 신설

-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신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문을 만든 후 신설하였음. 따라서 대학급의 각종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설치령과 더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신설을 허용하는 조문이 제정되어야 함.
- ‘(가칭)인천예술종합학교’라는 각종학교의 설치령이 제정되어야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허용 조항에 ‘(가칭)인천예술종합학교’ 신설 조문이 제정되어야 하는 법적인 절차가 수반되어야 각종학교로라도 신설이 가능함.

## 2. 증원 방안

### 1) 국립인천대학교의 단과대학으로 예술대학 캠퍼스 조성

- 현재 국립인천대학교의 경우 예술과 관련하여 예술체육대학 내에 조형예술 학부와 디자인학부, 공연예술학과 등을 갖추고 있음. 그러나 전통적인 예술 영역의 대표가 미술과 음악이라고 할 때 음악 관련 학부(과)가 부재한 실정으로 예술대학으로서의 위상이 낮음.
- 시·도별 대표적인 국립대학들이 대개 미술과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대학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인천은 음악 관련 학부(과)가 부재하여 예술대학의 위상이 낮은 편임. 충북도 그러하며 경남은 예술대학이 없음.

<표 III-1> 11개 시·도별 국립대학의 예술대학 설치 현황

지역	학교명	단과대학	전공별 학부(과) 설치 현황			
			미술	음악	무용	공연예술
서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음악대학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디자인학부 (공예, 디자인)	성악과, 작곡과, 국악과, 기악과 (피아노, 현악, 관악)		
부산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조형학과, 디자인학과	음악학과, 한국음악학과	무용학과	예술문화 영상학과
인천	인천대학교	예술체육대학	조형예술학부 (한국화, 서양화), 디자인학부		공연예술학과	
강원	강원대학교	문화예술대학	디자인학과, 미술학과	음악학과	무용학과	영상 문화학과, 스토리 텔링학과
충북	충북대학교	(융합학과군)	조형예술학과 (동양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학과			
대전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조소과, 디자인창의학과	음악과, 관현악과		
전북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음악과, 한국음악학과	무용학과	
광주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음악학과, 국악학과		
대구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음악학과, 국악학과		
경남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민속 무용학과	
제주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부, 산업디자인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 문화조형디자인)	음악학부		

자료: 각 대학교 홈페이지 참고

- 따라서 국립인천대학교가 음악 관련 학부(과)까지 갖춘 예술대학을 운영한다면, 명실상부한 국립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 수 있을 것임. 또한, 인천 관내 문화예술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타 지역 대학으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도 일부 해소 가능함.
- 국립인천대학교가 종합적인 예술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총량 범위 내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2) 연세대학교의 단과대학으로 예술대학 캠퍼스 설치

- 연세대학교의 경우 인천 관내에 국제캠퍼스를 조성, 운영 중임.
- 서울 신촌캠퍼스에 음악대학이, 원주캠퍼스에 디자인예술학부와 디자인경영학협동과정이 개설되어 있는데, 역시 순수 미술이나 무용 등의 관련 학부(과)는 부재한 실정임.
- 따라서 연세대학교가 단과대학으로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예술대학을 인천 관내에 설치, 운영한다면 연세대학교의 종합대학으로서의 위상도 제고될 수 있을 것임.
- 물론 연세대학교가 예술대학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총량 범위 내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3. 이전 방안

### 1) 타 과밀억제권역이나 수도권 지역의 예술대학 이전

-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4년제 대학의 이전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만 가능함.
-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심의 없이 수도권 내에서는 이전이 가능함.



## IV 결론

□ 인천 지역에는 문화예술계와 시민들이 예술대학 설립을 원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대학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천 지역에 전문예술인과 문화예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종합예술대학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문화예술계를 비롯하여 전 시민이 공감하는 바임.
  -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수도권에 속하는 인천 지역에 대학을 신설하거나 증원, 이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학생수 감소 추세로 인해서도 신설, 증원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는 수도권 내 불균형을 심화시켜 실효성이 미약함.

-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하여 마련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여러 가지 규제가 실질적으로는 크게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임.
  - 수도권 내 대학 신설을 억제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는 연평균 11%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기도는 인구증가와 대학설립이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4년제 대학 설립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음(중부일보, 2009.9.18).
  -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로의 집중이지 수도권 전체로의 집중은 아니며, 오히려 수도권 내 불균형이 서울로의 집중을 더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 **현행 법규 내에서 인천 지역에 4년제 예술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함.**

**1) 국립인천대학교 예술대학 캠퍼스 별도 조성(총량 범위 내 증원 심의)**

- 인천 지역에 예술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현재 법규 내에서는 증원으로 가능한 국립인천대학교의 예술대학 캠퍼스 조성 방안임.
- 음악 관련 학부(과)의 증원만 있으면 되기에 증원 인원수가 많지 않아도 되고, 공연예술학과의 무용 분야를 독립시켜 종합적인 예술대학으로서 발전시키기에 용이함. 총량 범위 내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2) 과밀억제권역의 예술대학 이전(심의)**

- 다음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타 과밀억제권역의 예술대학을 이전하는 방안임.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 전체 이전이 쉽지 않았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인천으로 이전하려는 예술대학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임.
- 단과대학으로 예술대학 캠퍼스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함. 이전 또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후 권역 내에서 가능함.

주제어 ▶ 문화예술, 전문인력, 문화주권, 예술대학



## 참고문헌

- 김창수·최영화(2016). 인천 예술교육클러스터 조성 전략. 인천발전연구원 미발간물.
- 문화체육관광부(2016). 문화기반시설총람 2016.
- 부산대학교(2017). 부산대학교 학칙(2017.6.9.)
- 인천광역시의회(2009). 2009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인천대학교 주요업무보고.
- 인천대학교(2017). 인천대학교 학칙(2017.7.12.)
- 인천예술고등학교 내부자료.
- 조달청(2016). 2016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 주성돈(2015).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관리방안.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7권 제3호, pp.139-159.
- 중부일보(2009.9.18.). “경기도, 4년제 대학 설립규제 완화 촉구”
- 한국개발연구원(2007).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건설사업.
- 각 대학교 홈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 학교알리미 <http://www.schoolinfo.go.kr>